



가처분 결정에 대한 불복

47

- 신청인(특허권자) 패소시
 - 결정문 송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 항고
 - 고등법원 지재권 전담재판부에서 항고심 심리함
 - 고등법원에서 패소시 대법원에 재항고함

- 피신청인(침해자) 패소시
 -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: 동일 재판부
 - 이의신청에서도 패소하면 고등법원에 즉시 항고
 - 고등법원에서 패소하면 대법원 재항고
 - 가처분결정의 집행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: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음
 - 본안제소명령 신청
 - 가처분결정 취소신청/해제신청

불복제도 정리

48

- ◆ 가압류, 가처분결정에 대한 불복
 - ◆ 인용결정 → 이의/취소, 기각·각하결정 → 즉시항고,
 - ◆ 일부인용 결정에 대한 불복
 - ◆ 채권자는 즉시항고, 채무자는 이의를 한 경우
 - ◆ 견해대립: 이의우선, 즉시항고우선. 선행절차우선
 - ◆ 실무: 이의우선
- ◆ 가압류, 가처분집행에 대한 불복
 - ◆ 집행에 관한 이의
 - ◆ 집행문부여의 소,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의 소
 - ◆ 제3자이의의 소
 - ◆ 즉시항고, 특별항고

불복제도의 변경

49

	판결절차	→	결정절차
통지	송달		고지(상당한 방법)
심리방식	필요적 변론		임의적 변론 / 심문
증거조사	증명		소명
효력	확정시 또는 가집행		즉시 효력 발생
서면진술	○		×
증거서류교부	○		×
변론갱신	○		×

이의신청, 취소신청의 관할법원

50

- ◆ 보전처분을 명한 법원의 전속관할
 - ◆ 항소심에서 가압류, 가처분결정 → 이의, 취소소송도 항소심의 전속관할
 - ◆ 예외)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
 - ◆ 취소신청 당시 본안이 이미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안법원(민사집행법 제 288조 제2항 단서)
 - ◆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압류결정
 - ◆ 본안소송은 부산지법에 제기
 - ◆ 부산지법에서 채권자 패소, 채권자 항소
 - ◆ 부산고법에 본안사건 계속 중
 - ◆ 채무자가 1심판결(채권자 패소)을 이유로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경우에는 부산고법에 취소신청을 해야
 - ◆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취소신청 하면 이송

이의신청

51

- ◆ 별개의 독립된 소송절차 아님
 - ◆ 당사자지위 그대로 유지
 - ◆ 채무자, 일반승계인만 이의가능(특정승계인은 보조참가)
 - ◆ 채권자에게 발송송달 가능
 - ◆ 인가결정 or 취소결정
- ◆ 보전처분을 부당하게 하는 모든 사유가 이의사유

가처분 취소신청

52

- 별개의 독립된 소송절차
 - 새로운 당사자 지위
 - 신청인 - 피신청인
 - 신청인 자격 확대 - 취소신청권, 본안제소명령 신청권은 대위행사 가능
 - 채권자에게 발송송달 못함
 - 취소결정 or 취소신청기각결정
- 취소사유는 법에서 정한 것만
 - 채권자에게 제소명령송달 & 제소기간 도과
 - 사정변경(후발적 사유)
 - 피보전권리 소멸
 - 보전의 필요성 소멸
 - 집행 후 3년 경과
 - 담보제공(가압류)
 - 특별사정 시 담보제공(가처분)

신청인, 채권자가 공탁한 담보

53

- ◆ 채무자의 담보에 대한 권리행사
 - ◆ 채무자는 담보에 대해 우선권 보유
 - ◆ 채무자의 권리행사 방법
 - ◆ 본안소송에서 채권자 패소판결 확정되면, 채무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
 - ◆ 부당위법한 가압류, 가처분의 신청·집행·그로 인한 손해발생
 - ◆ 채권자의 고의, 과실은 추정(판례)
 - ◆ 채무자 승소 후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자의 공탁금(담보물) 회수청구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 등 채권집행을 하여 공탁금을 받아가면 됨

심판과 소송의 관계 - 특허침해소송 절차의 중지신청

54

- 특허법 제164조 제2항: “침해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은 소송절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특허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**중지할 수 있다.**”
 -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재량규정임
- 이미 무효심판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여 그 심판절차가 상당 정도 진행되었고, 심결이 임박한 경우라면, 법원은 보통 소송절차를 기일 추정의 방식으로 중지함
- 만약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특허유효를 전제로 한 재판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므로 재판 진행이 무용한 결과 초래하기 때문
- 무효심결이 있다면 그 심결확정 전에도 무효항변을 인정하는 실무 경향
- 심판을 활용하려면, 선제적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침해소송이 시작되면 특허 무효 항변을 적극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음

부당가처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

55

- 가처분이 인용 집행된 후 특허가 무효로 되거나, 본안에서 특허권자가 패소 확정되는 경우 부당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부담 가능성이 높음
- 특허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침해자의 재산을 가압류한 경우 이후 특허가 무효가 되는 등으로 비침해로 결론이 나면 부당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부담 가능성이 높음
- 따라서,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신청할 경우 이러한 위험요소도 미리 고려해야 함

지재권분쟁, 특허심판소송, 침해소송, 민형사소송, 손해배상, One-Stop 대응

T. 02-591-0657 E. kkh@kasanlaw.com H. www.kasanlaw.com